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
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代 강석철
전화 061 - 729 - 4334

보도자료
2024. 10. 30.(수)

제 목

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뇌물수수 전 공무원 및 공여 건설업자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오늘(10. 30.)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김형걸)·수사과(수사과장 김용주)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(노후 주택 등 개량·수리사업)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여, 위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2억 5,000만 원을 주고받은 前 여수시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 A 및 건설업자 B, C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
 - 공무원 A는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으로서 B, C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,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시세(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)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B, C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
 - 한편, 건설업자 B, C는 위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여수시 등으로부터 약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거나, 아파트,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,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
- 순천지청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지역토착형 비리를 엄단하여 청렴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,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I

피고인

- A [52세, 前 여수시 도시재생과 재생정비팀장(6급)] ※ '22. 6. 명예퇴직
- B [55세, 건설업(甲업체 운영)]
- C [여, 57세, 건설업(甲업체 운영)] ※ B, C는 동업관계

II

공소사실 요지

① 공무원 A

- '19. 6.경 건설업자 B, C로부터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, '20. 1.경 자신의 임야를 시세(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 상당)보다 100배 이상인 3억 원에 B, C 운영 법인에 매도 [특정범죄가중범위반(뇌물), 범죄수익은닉규제범위반]
- '22. 1.경 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받음[허위공문서작성 등, 위계공무집행방해]

② 건설업자 B·C

- '20. 1.경 위와 같이 공무원 A에게 뇌물 교부 [뇌물공여 등, 범죄수익은닉규제범위반]
- '19. 6.~'20. 2.경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수시 등을 속여 선금금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[특정경제범죄범위반(사기) 등]

III

주요 수사경과

- '24. 1. 3. 감사원 수사 의뢰서 접수 → 수사과 지휘
※ 감사원은 '23. 6. ~ 9. 직무감찰 과정에서 본건 확인

- '24. 3. 29. 여수시청 및 피고인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
- '24. 4. ~ 9. 계좌추적, 압수물 분석, 피고인들 및 사업 관련자들 조사
- '24. 10. 10. 피고인들 구속
- '24. 10. 15. 수사과 → 형사3부, 구속 송치
- '24. 10. 30. 피고인들 구속 기소

IV 수사 결과 및 의의

- 이 사건은 감사원이 '공직비리 직무감찰' 실시 결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순천지청 형사3부와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한 사안입니다.
 - 순천지청은 감사원 수사의뢰서 접수 즉시 수사과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진행하고, 10여 명이 넘는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였습니다.
- 수사한 결과,
 - 공무원 A는 B, C 운영 업체의 위 사업 관련 공사 수주 등 편의 제공 대가로, 본인 소유 임야(공시지가 270만 원)를 B, C가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에 3억 원에 매도하고(실제 2억 5,000만 원 수수),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하기도 하였으며,
 - 건설업자 B, C는 위 A의 도움으로 여수시 등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받고 수령한 약 14억 원의 선급금으로 위 임야 대금 지급, 아파트 및 고가의 외제차 구입 등 위 공사와 무관하게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결국, B, C가 운영하던 부실 건설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이 예정보다 약 2년 정도 지체되어,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

● 한편,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임야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뇌물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수수·공여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, 수수한 뇌물은 전액 추징 보전 청구하여 빈틈없는 불법수익 박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● 이 사건은 사업을 담당할 주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결탁하여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안으로,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공공사업의 경우 전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V

향후 계획

● 순천지청은 앞으로도 지역 공공사업 관련 비리에 엄정히 대응하고,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